# 대법원 2023도15976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아동학대)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¹)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5976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사건의 개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은 대구 소재 ○○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근무기간 2022. 3. 1. ~ 7. 15.)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은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임

#### 나. 공소사실의 요지

<sup>1)</sup>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up>2.</sup>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교사이고 피해아동이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충동이나 자극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행위 상대방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음
- 피고인은 2022. 5. 중순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 아동을 태우고 대구 소재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성 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

#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원심 : 항소기각

## ● 원심의 유죄 판단 이유

-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이에 포함됨(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 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

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 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는 2022. 7. 4. 최초 경찰 조사 시 ② '피고인이 먼저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④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성관계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이러한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1세로 피해자(만 17세)보다 14세 많았고, 이 미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한 고등학교 의 기간제 교사로서 수업시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적극적인 연락을 계기로 학교 외부에서도 서로 만나기 시작함
-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학교 내에서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사적으로 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다고 보임
- ② 실제로 피고인은 저녁 시간대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호텔 등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도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지도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볼 수 있음
-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④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시기의 남학생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만,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많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건전하고 올바 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함. 이처럼 성적 가치관을 형성 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 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 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음
- <u>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면서 상고</u> 함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고등학교 여교사(만 31세)가 남학생(만 17세)과 성관계를 한 경우 아동복 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